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홍승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이현지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4,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5. 3. 13. 구속기소, 서울서부지법 2025고단571호)과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D'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2024. 11. 18.경부터 202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D' 게임의 사설 서버인 'G'를 개설하고, 인터넷 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D'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등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게 하는 등 위 사설 서버를 운영, 관리하고, B은 양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설 서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접속기'를 통한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위 사설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사설 서버의 이용자로부터 2024. 11. 18.경 J 명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아이템 대금 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설 서버 이용자로부터 총 168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대금을 위 J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



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G 디스코드 채널 캡처자료, G 채널 후원안내 캡처자료, 운영자와 후원금에 대한 대화 캡처자료, 게임실행 캡처자료, 후원금 이체증명서, G 디스코드 채널 시작 코너 캡처자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포 소유자 M 캡처자료, 거래내역, 디스코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포 캡처자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포 캡처자료, 운영자와 후원금 관련 디스코드 대화 캡처자료, 게임 내에서 후원금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는 캡처자료, 디스코드 채널 후원금 안내에 대한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정리 관련),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저작권권리변동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익금 관련 정정 및 동의), J A 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전자정보 압수물 N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저작권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 서버를 운영,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5. 9. 12.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취득한 이득,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_____